



## 국토교통부

수신 서울특별시(재생지원과장)

(경유)

제목 질의 회신(서울특별시-시공자와 공사계약시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 
의 범위)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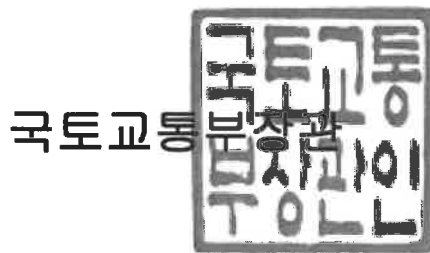
1. 재생지원과-4467(2014.3.27.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### 2. 질의요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“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”의 범위는 (사업구역 내 모든 건축물과 부속된 구조물, 인입 설비 등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건축물과 그 대지 내에 설치된 전기, 가스, 상하수도 시설만 포함하고 그 외 사업구역 내 시설물은 포함되지 않는지)

### 3. 회신내용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, 이 때 “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”는 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끝.



사무관대우 **박재호** 행정사무관 **정승현** 과장 **전결 04/23**  
감태오

협조자

시행 주택정비과-1245 ( 2014.04.23. ) 접수 재생지원과-5584 ( 2014.4.23. )  
우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/ <http://www.molit.go.kr>  
전화 044-201-3389 / 전송 044-201-5532 / [pjaeho@molit.go.kr](mailto:pjaeho@molit.go.kr) / 공개  
꿈꾸세요. 국민행복, 정부3.0이 함께 합니다.